KOSHA GUIDE

C - 91 - 2015

- (나) 인근 소방관서로의 화재발생 신고 방법
- (다) 층별 근로자에게 화재발생 상황 전파 및 피난 유도 방법
- (라) 응급구호 방법
- (마) 소방 및 피난시설 작동 방법
- (바)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및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방법
- (사) 소방대 도착 시 현장 유도 및 정보 제공
- (아) 그 밖에 화재 초기대응에 필요한 사항
- (4)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초기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초기대응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신속히 초기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.
- (5) 매뉴얼에는 상층부로의 공사 및 내·외부 마감공사의 진행에 따라 화재발생 상황(발생 층 및 발생규모)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초기대응반의 행동방법을 정하여 둔다.
- (6) 화재발생의 대응훈련은 가능한 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를 권장하며, 비상 시에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- (7)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물 내에 있는 근로자에게 즉시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알려야 하며, 매뉴얼에서 정한 대로 근로자가 피난층 또는 피난안전 구역으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.
- (8) 화재가 발생한 경우, 피난유도의 최종목적은 모든 근로자를 지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어야 한다.
- (9) 지상층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아래층에 위치한 근로자는 지상층으로 피난을 유도하며, 위층에 위치한 근로자는 위층의 피난안전 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되 발화점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피난계단을 통하여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.
- (10) 피난안전구역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크레인, 리